

|       |           |
|-------|-----------|
| 의안번호  | 2205830   |
| 의 퇴 인 | 윤종오의원     |
| 회 답 일 | 2024.12.9 |
| 추계번호  | 24B5365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861억원, 2030년 5,262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2조 5,298억원(연평균 5,060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br>(안 제19조의5 신설) | 4,851 | 4,948 | 5,047 | 5,148 | 5,251 | 25,247 | 5,049 |
|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br>(안 제19조의7 신설)         | 1.0   | 1.0   | 1.0   | 1.0   | 1.0   | 5.0    | 1.0   |
|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br>(제19조의9 신설)           | 7.9   | 8.1   | 8.3   | 8.5   | 8.7   | 41.5   | 8.3   |
|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br>(안 제19조의10 신설)             | 0.8   | 1.0   | 1.0   | 1.0   | 1.0   | 4.8    | 1.0   |
| 합계                                              | 4,861 | 4,959 | 5,058 | 5,159 | 5,262 | 25,298 | 5,060 |
| 국비                                              | 3,475 | 3,545 | 3,616 | 3,688 | 3,762 | 18,085 | 3,617 |
| 지방비                                             | 1,386 | 1,414 | 1,442 | 1,471 | 1,500 | 7,213  | 1,443 |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종사자별 보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 사업계획 등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19조의5 신설<br>(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재량규정 |
|    |                                                 |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4항)                                                                                                                                                                       | 의무규정 |
| 2  | 안 제19조의6 신설<br>(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재량규정 |
| 3  | 안 제19조의7 신설<br>(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br>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br>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br>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의무규정 |
|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함(제2항)<br>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br>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br>3.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br>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의무규정 |
|    |                                                 |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둠.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제4항)                                                                               | 의무규정 |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4  | 제19조의9 신설<br>(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br>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택배<br>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모든 화물<br>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품목 | 의무규정 |
| 5  | 안 제19조의10 신설<br>(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 의무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br>여부 | 비고                                                                                                                                  |
|----|--------------------------------------------------|----------|-------------------------------------------------------------------------------------------------------------------------------------|
| 1  | 안 제19조의5 신설<br>(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 ○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2  | 안 제19조의6<br>(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 ×        | • (미첨부3호) 시·도지사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도별 연수기관 설립 및 운영, 지정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3  | 안 제19조의7 신설<br>(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 ○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4  | 제19조의9 신설<br>(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 ○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br>여부 | 비고                                |
|----|-------------------------------------|----------|-----------------------------------|
| 5  | 안 제19조의10 신설<br>(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 ○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9조의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가입하는 보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실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정부의 지원 범위가 불확정적이어서 유사한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단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액을 추산함
- (안 제19조의7·안 제19조의9·안 제19조의10 신설)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위원회 설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신고센터 운영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여 추산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sup>1)</sup>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 2.0  | 2.0  | 2.0  | 2.0  | 2.0  |
| 명목임금상승률  | 3.6  | 3.9  | 3.8  | 3.8  | 3.8  | 3.8  |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보험료 지원(안 제19조의5 신설)

- 개정안<sup>2)</sup>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가입자 수에 지원비용을 곱하여 추산
  - (추계대상)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장에 등록된 종사자는 2023년 기준 55만명으로 추정되며, 동 수준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sup>3)</sup>
    - 개정안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 55만명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보험료 단가) 보험 가입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121만원으로 가정함
    - 보험료 단가는 연령별, 근로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입자별 보험료를 추산하기 곤란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만 40세 1년 무사고인 종사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값을 평균치로 가정하여 적용함
    - 보험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함

[표 2] 보험료 비교 예시

| 구분       | 보험사 평균 <sup>1)</sup> | 공제 상품 <sup>2)</sup> |
|----------|----------------------|---------------------|
| 보험료 (연간) | 약 220만원              | 121만원               |

주 1) 보험사 평균 : 이륜차 보험 온라인(다이렉트) 보험료('24.09.23.) 기준

2) 공제상품 : 월 단위 상품으로 가입후 1년간 무사고 가정 연간 예상 보험료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9.30.)

#### 2) 안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장에 등록된 종사자는 2023년 조사 기준 55만명으로 집계되며, 인증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인증사업장에 등록된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

- (재정부담비율) 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비용 지원 비율은 불확정적이므로, 유사사례의 보험가입비용 지원 사업의 평균부담율을 감안하여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가정함

[표 3] 재해 및 안전 관련 주요 보험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br>(소관부처)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연간보험료(원)                | 2024예산(백만원) |
|----------------------------|--------------------------------------------|--------------------------------------------------------------|-------------------------|-------------|
| 풍수해보험<br>(행정안전부)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보험료<br>56.5~70%(국비)<br>13.5%(지방비)                            | 548~72,082              | 38,045      |
| 농업인안전보험<br>(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                      | 50%(일반농)~70%<br>(영세농)(국비)<br>지방비 13%                         | 101,000~193,00          | 62,645      |
| 양식어업재해보험<br>(해양수산부)        |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보험                             | 순보험료 50%<br>지원(국비)<br>지방비(2~30%)                             | 1,025,250               | 24,110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br>(해양수산부) |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 어선원 순보험료<br>47~80%지원(국비<br>, 어선중량별<br>지원율 상이)<br>10~20%(지방비) | 1,298,080~<br>1,830,080 | 166,077     |
|                            |                                            | 어선 순보험료<br>42% 지원(국비)                                        | 4,012,260               |             |

주: 사업개요는 [참고자료]에서 확인  
자료: 각 부처 예산사업설명자료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추계대상수(A, 명)    | 550.000 | 550.000 | 550.000 | 550.000 | 550.000 | 2,750,000 |
| 지원단가(B, 백만원)   | 1.26    | 1.29    | 1.31    | 1.34    | 1.36    | —         |
| 국비(C=A×B×50%)  | 346,533 | 353,463 | 360,532 | 367,743 | 375,098 | 1,803,369 |
| 지방비(D=A×B×20%) | 138,613 | 141,385 | 144,213 | 147,097 | 150,039 | 721,348   |
| 합계(C+D)        | 485,146 | 494,848 | 504,745 | 514,840 | 525,137 | 2,524,717 |

#### 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지원(안 제19조의7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회의운영비와 임차료 및 사업비를 합산하여 추산함

-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원회운영사항을 참고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개정안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공무원 위원 3인, 민간위원 13인, 전문위원 7개 분과 전문가 위원 5인(35인=5인×7개분과)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에서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은 13인, 전문위원은 5인으로 가정
  - 전문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 5명(7개분과×5인)으로 가정
- (회의심의비용)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연 15회, 연 3회 각각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수당은 30만원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sup>4)</sup>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214쪽)

[표 5] 위원회 회의심의비용 단가: 2024년 기준

| 구분    |     | 인원(명) | 횟수(회) | 분과위원회수 | 단가(원)   | 합계(백만원) |
|-------|-----|-------|-------|--------|---------|---------|
| 위원회   | 심의비 | 13    | 15    | -      | 300,000 | 58.5    |
| 전문위원회 | 심의비 | 5     | 3     | 7      | 300,000 | 31.5    |
| 합계    |     |       |       |        |         | 90      |

- (임차료) 임차료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5회, 3시간(시간당 2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추진비) 적정배달료 고시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간 6백만원으로 가정함
  - (안전운임위원회) 연 15회×13명×20천원 = 3,900천원
  - (전문위원회) 연 3회×7개×5명×20천원 = 2,100천원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심의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위원회 심의비용 | 90   | 90   | 90   | 90   | 90   | 450 |
| 임차료      | 3    | 3    | 3    | 3    | 3    | 15  |
| 사업추진비    | 6    | 6    | 6    | 6    | 6    | 30  |
| 합계       | 99   | 99   | 99   | 99   | 99   | 495 |

다.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 및 지급(안 제19조의9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는 경우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적정배달료 공표 및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공표 및 지급 관련 예산을 참고하여 연간 7.9억원 소요될 것으

로 추산

- 운송원가 조사비: 2.9억원(운송업체조사, 차주조사, 첨단자료기반 조사 등)
- 원가산정 및 타당성 분석 : 2억원(원가작성 방법 고도화사업비: 5,600만원, 원가산정 타당성 분석비용: 1.4억원)
- 위탁연구용역비: 3억원(책임연구원 1인(0.6억원), 연구원 2인(0.5억원), 보조원 4인(0.9억원) 등 인건비 2.0억원, 경비 1억원(여비, 회의비, 유인물비, 세금 등)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

[표 7]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 및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적정배달료 공표 및 지급 | 790  | 809  | 829  | 850  | 871  | 4,149 |

라.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신고센터(안 제19조의10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신고센터 운영비(여비와 홍보비) 및 시스템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추산함

- 개정안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비용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시스템 구축비용과 신고센터 운영비를 참고하여 추산함
  - 시스템 구축비용(50백만원): 업무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등 사업 첫 해에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sup>5)</sup>
  - 시스템 운영비용(68백만원): 구축 이후 시스템 유지 및 보수비용이 매년 발생(개발 S/W 유지보수비 11백만원, S/W 운영비: 57백만원)<sup>6)</sup>
  - 안전운임 신고센터 운영비(27백만원): 인건비(2인, 22백만원), 여비(1.1백만원), 회의비(3백만원)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

5) 2019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신고센터 초기 구축비용 예산 참고

6) 2024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스템 운영비용, 신고센터 운영비 예산 참고

[표 8]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적정배달료 신고센터 | 78   | 97   | 100  | 102  | 105  | 481 |

####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 운영,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공표,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861억 1,300만원, 2030년 5,262억 1,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조 5,298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보험료 지원 | 485,146 | 494,848 | 504,745 | 514,840 | 525,137 | 2,524,717 |
| 위원회 운영                | 99      | 99      | 99      | 99      | 99      | 495       |
| 적정배달료 공표              | 790     | 809     | 829     | 850     | 871     | 4,149     |
| 적정배달료 신고센터            | 78      | 97      | 100     | 102     | 105     | 481       |
| 합계                    | 486,113 | 495,854 | 505,773 | 515,891 | 526,212 | 2,529,842 |
| 국비                    | 347,500 | 354,469 | 361,560 | 368,794 | 376,172 | 1,808,495 |
| 지방비                   | 138,613 | 141,385 | 144,213 | 147,097 | 150,039 | 721,348   |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종사자별 보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 사업계획 등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종사자별 보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 사업계획 등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문지은 | 배아형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문지은 | 02-6788-4645 | mtsophia@assembly.go.kr |